

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

I 추진방향 및 개요

1 추진방향

-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,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·해소 하고 주민 안전의식 제고

※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2조의3(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)

2 추진개요

- 점검기간 : '25. 4. 14. ~ 6. 13.(61일간)
- 점검대상 : 총 74개소 (공공시설 21개소, 민간시설 53개소)
 - 지자체 자체수행 61개소, 중앙부처 위임수행 13개소
 - ※ 주민점검신청 접수 시 점검대상 추가 가능
- 참여기관 : 영동군,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군민 등
- 점검방법 : 시설, 전기, 가스, 소방 등 분야별 취약 요소 합동점검

분야별 점검대상 수		계	① 지자체 자체수행			② 지자체 위임수행		
			소계	공공시설	민간시설	소계	공공시설	민간시설
분야	관련 부서	74	61	10	51	13	11	2
일반건축시설	도시건축과	5	5	-	5			
교통시설	도시건축과	3	3	3	-			
숙박시설	관광과, 가족행복과, 스마트농업과, 산림녹지과	13	13	2	11			
복지시설	주민복지과, 보건소	8	6	-	6	2	1	1
다중이용시설	관광과, 국악문화예술과, 가족행복과	13	13	-	13			
판매시설	경제과	1	1	-	1			
산업시설	경제과, 농촌신활력과, 주민복지과, 환경과	11	11	5	6			
자연시설	건설교통과, 재난안전과	9				9	9	-
기타	국악문화예술과, 과수축산과, 건설교통과	11	9	-	9	2	1	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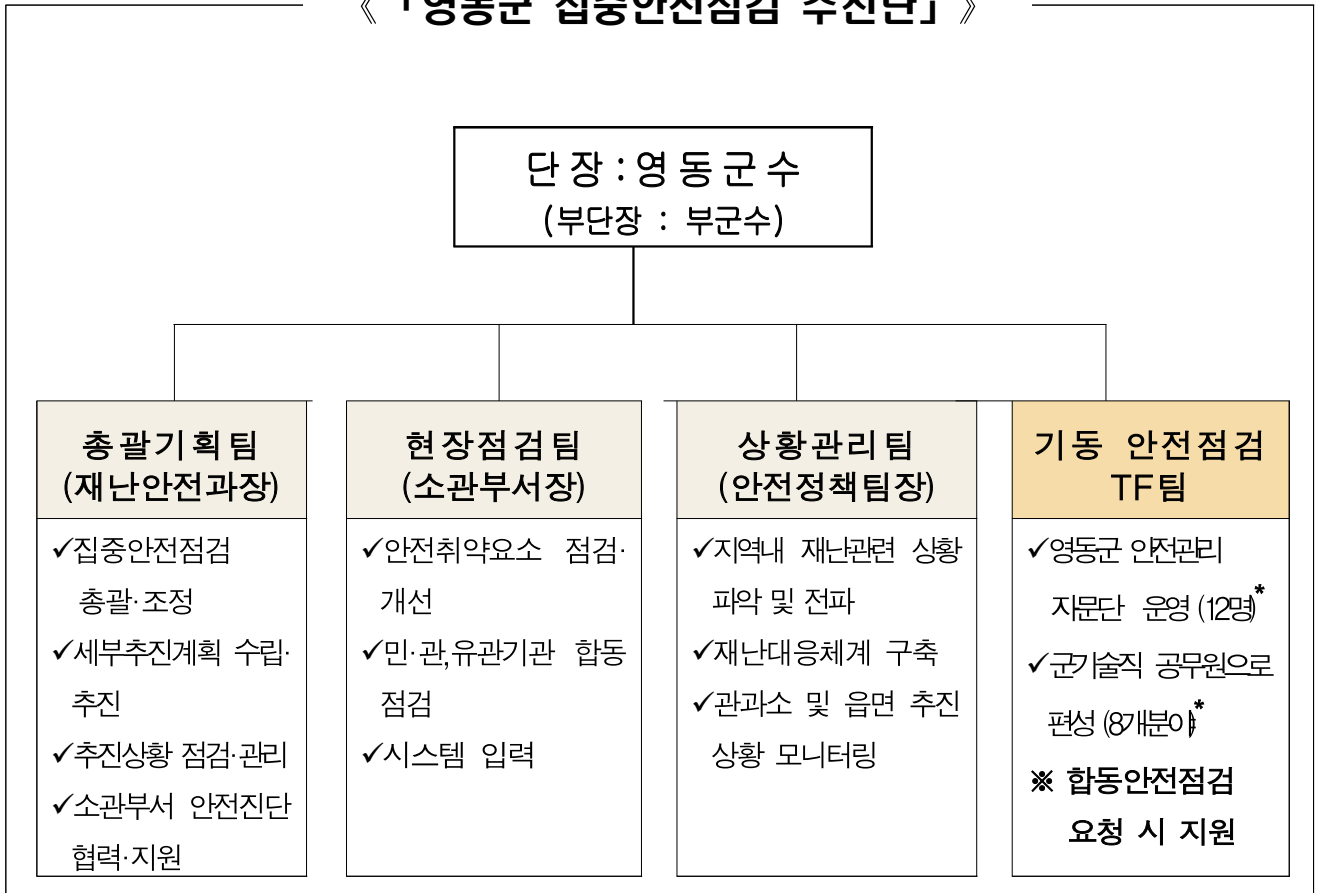
II

세부 추진계획

1 추진 체계

- 「영동군 집중안전점검 추진단」 구성 [4개팀* 운영]

《 「영동군 집중안전점검 추진단」 》



- 「영동군 기동 안전점검 TF팀」 구성

연번	구분	직급	성명	비고
계	8개 분야		9명	
1	토목	시설6급	이일우	
2	토목	시설6급	김주택	
3	건축	시설7급	김성수	
4	통신	방송통신9급	이승교	
5	전기	공업7급	박명수	
6	가스	공업7급	이완우	
7	식품위생	의료기술7급	박현우	
8	산림	산림보호직	안성섭	
9	방재안전	방재안전9급	김성수	

○ 민관 협업지원 체계 구축 운영

- 시설별 소관부서,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 민관합동점검 실시
- 안전보안관,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자율안전점검 활동 전개 및 안전문화운동 참여

2 점검 일정

-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 수립 : 2월
- 주민점검신청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: 2월~4월
- 사전준비(현장점검 담당 부서 교육 등) : 3월
- 집중안전점검 추진 : 4월~6월
 - ※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보고회 실시(사전, 중간, 최종)
- 주민 참여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: 4월~6월
- 점검 결과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(계속) : 7월 이후

3 점검 대상

- 점검 대상 수 : **총 74개소** (공공시설 21개소, 민간시설 53개소)
 - 지자체 자체수행 61개소, 중앙부처 위임수행 13개소

○ 점검 대상 선정기준

(지자체 자체수행)

시설 유형	소유 (민간/ 공공)	2025년 중점 점검 대상	
		점검 시설수	점검 대상 선정 기준
	민간51/ 공공10	61	
공장시설	민간6/ 공공2	8	▶ (노후도)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산업안전·화재·배관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▶ (사고 위험성) 가연성 물질 제조,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산업안전 또는 화재·폭발 등 사고 이력 시설 30년 이상 또는 2개 종류 이상 매설 배관 보유시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
폐기물처리	공공1	1	▶ (노후도)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

시설			▶ (안전시설 부재) 소방설비(감지기, 소화전) 미설치 시설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매립지·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 - 최근 3년간 소방 관련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시설
전통시장	민간1	1	▶ (노후도) 시장현대화(전선 교체 분야)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미 실시한 중소형 전통시장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전가·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
공동주택	민간5	5	▶ (노후도/안전 등급)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▶ (점검 미흡) 연면적 660㎡ 이하 및 4층 이하 연립주택 -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·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 ▶ (안전시설 부재) 소방설비(스프링클러) 미설치 공동주택
숙박시설	민간11/ 공공2	13	▶ (노후도)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▶ (안전시설 부재) 소방설비(스프링클러) 미설치 숙박시설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·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 - 미신고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·조사 이력 숙박시설
다중이용 업소	민간13	13	▶ (사고 위험성) 안전시설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* * 지하층, 숙박 제공, 고시원, 밀폐구조 등
사찰	민간2	2	▶ (안전시설 부재)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전기·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 ▶ (사고 위험성)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보유한 시설
요양시설	민간6	6	▶ (안전시설 부재)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전기·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 ▶ (사고 위험성)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보유한 시설
자동차 정비소	민간3	3	▶ (안전시설 부재) 소방설비(화재감지기)가 미설치 시설
가축농장	민간4	4	▶ (사고 위험성)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 농장 중 노후도를 고려 선정
공사현장	공공2	2	▶ (노후도) 상주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사 현장 (50억 미만) ▶ (사고 발생) 최근 3년간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이력 공사 현장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요소 발견 공사 현장 ▶ (사고 위험성) 보행로·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 - 안전 관련 민원 발생 공사 현장
교량	공공3	3	▶ (노후도/안전 등급)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- 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교량 ▶ (점검 미흡) 인프라 총조사 결과 점검 및 성능평가 등급 미 실시 시설 ▶ (사고 위험성) 교량 하부에 가설건축물, 적재물 등이 설치된 시설

(중앙부처 위임수행)

시설 유형	소유 (민간/ 공공)	2025년 중점 점검 대상	
		점검 시설수	점검 대상 선정 기준
	민간2/ 공공11	13	
국가유산	민간1/ 공공1	2	▶ 지자체 관리 국가유산(문화유산, 자연유산)
저수지	공공3	3	▶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
수문	공공2	2	▶ 「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수문 및 통문 (1종,2종), 제방(2종) 중 안전등급 C, D 시설물 ▶ 수해취약 제방구간 ▶ 10년이상 경과하고, 이질 재료가 연속되는 제방구간
제방	공공4	4	▶ 「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수문 및 통문 (1종,2종), 제방(2종) 중 안전등급 C, D 시설물 ▶ 수해취약 제방구간 ▶ 10년이상 경과하고, 이질 재료가 연속되는 제방구간
요양시설	민간1/ 공공1	2	▶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

○ 점검 대상 선정 요건

- 재난 관련 언론·주요사고 분석 및 제도적 취약성 등을 고려 20종 시설유형 점검 대상으로 선정
- 시설유형 20종 외 중앙행정기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선정된 지자체 관리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
- 그 외, 공무원, 민간전문가, 군민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점검대상 선정
- 중복점검 최소화를 위해 3개월 이내 점검시설은 제외
-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개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점검 대상시설은 제외
 - ※ 단, 점검 분야를 확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는 포함
- 다양한 시설이 점검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시설 유형별 10% 이내로 선정
- 민간 시설이 제외되지 않도록 점검 대상의 50% 내외 선정

4 「주민점검신청제」 활성화 ⇒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주민이 직접 신청

◇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(위험요인 해소방법 등)

- 신청기간 : '25년 4월 말까지
- 신청대상 : 공공,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* 중점
 - * 마을회관, 경로당, 교량, 복지회관, 산사태 취약지역, 노후건축물 등
- 신청방법 : 안전신문고 앱·포털 활용
 - * 홈페이지, 읍면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
- 주민점검신청제 홍보 : 2월 ~ 4월
 - * 홍보영상, 포스터, 현수막, SNS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
- ‘안전점검의 날’과 병행하여 안전 캠페인·자율안전점검 실천 운동 등 다양한 안전 문화 확산 운동 추진

5 점검 방법

- (기본 원칙) 담당 공무원*, 유관기관(공사·공단 등),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추진
 - 시설 유형별 점검 분야에 따라 전기·가스·소방 등이 합동점검 실시
 - * 점검 시설 설명·안내 및 점검 적절성 확인 등 총괄
- (20종 시설유형) 시설 유형별 점검 분야, 전문가 자격 기준, 점검표를 적용하여 점검
- (지자체 위임시설) 해당 시설 관계법령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한 유형별 점검 분야, 전문가 자격 기준 등을 준수하여 점검

(주의 사항) 점검 분야 누락, 자격 미충족, 점검표 미사용, 점검 항목 누락 등

- 민간전문가 중 (영동군 안전관리자문단) 활용

(단위 : 명)					
계	시설분야	전기분야	가스분야	소방분야	기타
12	7	1	1	1	2

-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로 점검의 실효성 확대 : 충북도 전문기술 인력풀(Pool) 활용

- 최첨단 점검장비 활용

- 시야가 가려지거나 접근이 힘든 높은 건물에는 첨단 점검장비(드론 등)를 적극 활용하여 점검 품질 제고

대상 시설	장비활용	비고
교량, 공동주택, 공사 현장 등	영동군 드론 활용	재난안전과

- **(사전 준비)**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점검 시설 **현황자료**(시설 개요, 이전점검 결과 등), 점검 항목, 위험도 평가 방법 등 **점검반에 사전 안내**(7일 이전)
- **(현장점검)** 점검가이드, 장비활용 등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항, 조치 여부를 모바일 앱 또는 관리시스템에 **결과 등록**
- **(위험도 평가)** 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 사항에 대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알 수 있도록 **평가 점수 기입**
 - 분야별 점검자가 각 항목 지적 사항에 따라 점수 부여
- **(주민 참여)** 주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**점검 과정** 주민 참여
 - ※ 자율방재단, 안전보안관 등 활용(점검대상 선정, 홍보활동 등)
- **(기관장 책임제)** 관심도 증대를 위해 **기관장(군수님) 총괄하에 점검 추진** (점검회의, 현장점검 등) **※ 평가지표에 '기관장 관심도' 항목이 포함됨**

6 예산 현황

구분	예산액(천원)	추진계획
계	24,000	
점검수당	20,000	민간전문가 참여 100천원 * 4명 * 50일 = 20,000천원
홍보비	4,000	현수막 제작 20개, 리플릿 제작 200부, 포스터 및 배너 제작, 홍보물품 구입 등

Ⅲ

안전점검 이행력 강화

①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

- (이력 관리) 모든 점검 결과는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일, 점검반, 지적 사항, 후속 조치 결과 등 입력
- 점검 결과 입력 시 점검표 스캔본 필수 등록 및 평가, 후속 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는 보수보강 대상 사진 등 함께 등록
-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
-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사용제한, 대피명령 등 긴급안전 조치 이행
-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실적을 시스템에 상시 입력하고, 분기별 이행 실태 확인점검 실시
 - 공공시설은 예산확보를 통하여 신속히 보수·보강 조치
 - 민간시설은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계도 및 안전조치 이행 요청
 - ※ 후속 조치 미 조치사항은 담당자에게 분기별 후속 조치 독려 메시지 발송
- 정밀안전진단, 보수·보강 관련 예산 필요시 추경 편성

②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

- 집중안전점검 홍보
 - 홍보 동영상, 전광판, 포스터, 리플릿 등 활용하여 읍면·유관기관·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집중 홍보
 - ※ 민간협회, 단체 등 회원 수 사전 파악
 - 보도자료,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소개

- 주민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SNS,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강화
- 공공기관, 다중이용시설, 읍면 등에 입간판·현수막 제작하여 설치
- 주민참여 활성화(자율안전점검 운동 확산)
 -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 사회전반의 자율안전점검 참여 분위기 조성
 - ※ 자율안전 점검표 제작·배포
 -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운동 참여 유도
 - 유관기관·단체와 함께 안전교육 캠페인 등 자율안전점검 홍보 강화
 - ※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의 자율점검 관련 협조 요청(교육청, 학교)
 -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자율점검·신고 확산
- 안전문화운동 확산
 - 안전보안관, 자율방재단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홍보,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문화 확산

3 **집중안전점검 담당자 교육계획**

- 집중안전점검 실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(2025. 3월중)

4 **특수시책**

- 자율안전점검 참여 우수자(기관) 경품(홍보물품) 제공
- **첨단 점검장비 활용** : 교량, 공동주택, 공사 현장 등 시야가 가려 지거나 접근이 힘든 높은 건물에는 첨단 점검장비(드론 등)를 적극 활용하여 점검 품질 제고

Ⅳ

향후 계획

□ 집중안전점검 시작 전 : '25. 3. ~ 4. 13.

-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: '24. 2월
- 집중안전점검 실무 담당자 교육 : '24. 3월
- 집중안전점검 시스템 입력 및 홍보 : '24. 3월
- 안전관리자문단 협의 : '24. 3월
- 전문가 인력풀 정비 및 수당 수요조사 : '24. 3월
- 집중안전점검 준비보고회 : '24. 4월

□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: '25. 4. 14. ~ 6. 13.

- 집중안전점검 추진 : 4. 14. ~ 6. 13.
-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회의(중간보고회) : '24. 5월
- 집중안전점검 추진결과 보고회의(최종보고회) : '24. 6월

□ 집중안전점검 기간 이후 : '25. 6. 14. ~

-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(계속) : '24. 7월

○ 점검대상 시설 수 : 74 개소

(단위 : 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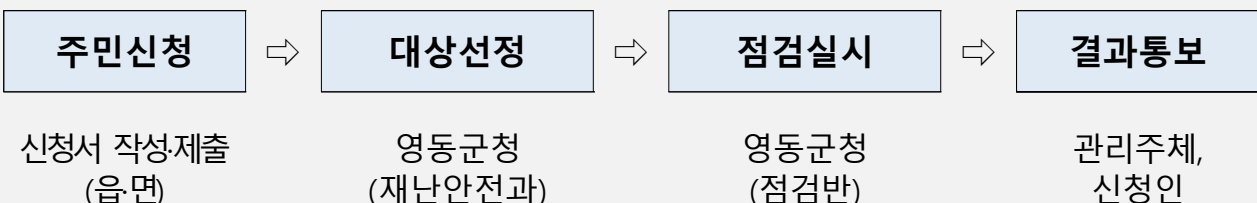
분 야	계	① 지자체 자체수행			② 지자체 위임수행		
		소계	공공시설	민간시설	소계	공공시설	민간시설
합 계	74	61	10	51	13	11	2
일반건축시설	5	5	-	5			
교통시설	3	3	3	-			
숙박시설	13	13	2	11			
복지시설	8	6	-	6	2	1	1
다중이용시설	13	13	-	13			
판매시설	1	1	-	1			
산업시설	11	11	5	6			
자연시설	9				9	9	-
기타	11	9	-	9	2	1	1

연번	구분	성명	소속	성별	위원 선정방식	관련자격	비고
1	단장	김선훈	유원대학교 (토목환경공학과)	남	위촉직	공학박사	
2	단원	유주환	유원대학교 (토목환경공학과)	남	위촉직	공학박사	
3	단원	조중근	유원대학교 (건축공학과)	남	위촉직	공학박사	
4	단원	이경락	유원대학교 (건축공학과)	남	위촉직	공학박사	
5	단원	김환식	유원대학교 (건축공학과)	남	위촉직	공학박사	
6	단원	신명철	정광건축사무소	남	위촉직	건축사	
7	단원	정운규	다솔건축사무소	남	위촉직	건축사	
8	단원	김정일	한국전기안전공사 영동지사	남	위촉직	전기기사	
9	단원	이종표	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	남	위촉직	가스기사	
10	단원	배태철	영동소방서	남	위촉직	소방학과졸업	
11	단원	김기홍	영산공업사	남	위촉직	건축구조물	
12	단원	민경영	(주)경영엔지니어링	남	위촉직	산업안전기사	

신 청 인	성 명	
	연 락 처	
점검대상 시설(물)	명 칭	
	위치(주소)	
시설점검 요청사항	※ 간략하게 작성 (필요시 사진, 동영상 등 첨부)	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25년 월 일 신청자: (서명 / 인)		

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.

- 신청기간 : ‘25년 4월 말까지
- 신청방법 : 군청(재난안전과) 및 읍·면에 신청서 비치, 민원인 신청
- 선정방법 : 영동군청 재난안전과에서 검토 후 선정
- 대상선정 :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,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
 - ※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, 공사 또는 소송(분쟁) 중인 시설물,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점검기간 :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
- 점 점 자 : 시·군별 점검반 구성
 - (현장방문) 점검시설의 위험요인 파악(의견 청취 등)
 - (점검실시)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
 - (점검결과) 원인, 위험의 정도, 보수·보강 방법 등 도출
 - (후속조치)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·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
- 결과통보 : 점검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
- 처리절차



참고 1

시설유형 20종 점검 대상 → 지자체 자체수행

연 번	시설유형	선정 기준
1	배터리 제조업체	▶ (점검 미흡) 일차전지, 축전지 제조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 (자체 점검 제외)이 없거나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
2	공장 시설 (산업단지 등)	▶ (노후도)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산업안전·화재·배관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▶ (사고 위험성) 가연성 물질 제조,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산업안전 또는 화재·폭발 등 사고 이력 시설 30년 이상 또는 2개 종류 이상 매설 배관 보유시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
3	폐기물 처리시설	▶ (노후도)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▶ (안전시설 부재) 소방설비(감지기, 소화전) 미설치 시설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매립자·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최근 3년간 소방 관련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시설
4	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	▶ (점검 미흡)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
5	전통시장	▶ (노후도) 시장현대화(전선 교체 분야)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미 실시한 중소형 전통시장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·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
6	공동주택	▶ (노후도/안전 등급)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▶ (점검 미흡) 연면적 660㎡ 이하 및 4층 이하 연립주택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·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▶ (안전시설 부재) 소방설비(스프링클러) 미설치 공동주택
7	주택	▶ (노후도/안전 등급)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·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▶ (사고 위험성) 주거용 컨테이너, 비닐하우스, 모듈러주택 등 임시시설 화목난로, 펠렛난로 등 화재 취약 난방시설 설치 주택
8	숙박시설	▶ (노후도)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▶ (안전시설 부재) 소방설비(스프링클러) 미설치 숙박시설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·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미신고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·조사 이력 숙박시설

연 번	시설유형	선정 기준
9	대규모점포 (백화점·대형 마트·지하도상가)	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(자체 점검 제외)이 없거나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시설
10	다중이용업소 (노래방, 목욕장업 등)	▶ (사고 위험성) 안전시설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* * 지하층, 숙박 제공, 고시원, 밀폐구조 등
11	사찰	▶ (안전시설 부재) 바닥면적 300㎡ 이하 시설(소화설비 설치 제외) ▶ (사고 위험성) 목조 문화재 보유 사찰, 미신고·미허가 건축물이 있는 사찰
12	요양시설	▶ (안전시설 부재)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전기·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 ▶ (사고 위험성)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보유한 시설
13	자동차 정비소	▶ (안전시설 부재) 소방설비(화재감지기)가 미설치 시설
14	가축농장	▶ (사고 위험성)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 농장 중 노후도를 고려 선정
15	하강 레저시설 (집라인·번지점프·패러글라이딩)	▶ (점검 미흡) 민간 소유 집라인·번지점프·패러글라이딩 시설 ▶ (사고 위험성) 안전 관련 민원 발생 시설
16	공사 현장	▶ (노후도) 상주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사 현장 (50억 미만) ▶ (사고 발생) 최근 3년간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이력 공사 현장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공사 현장 ▶ (사고 위험성) 보행로·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 안전 관련 민원 발생 공사 현장
17	교량	▶ (노후도/안전 등급)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교량 ▶ (점검 미흡) 인프라 총조사 결과 점검 및 성능평가 등급 미 실시 시설 ▶ (사고 위험성) 교량 하부에 가설건축물, 적재물 등이 설치된 시설
18	저수지 뉘시터	▶ (사고 위험성) 방갈로 또는 취사 시설을 갖춘 시설 ▶ (점검 미흡)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시설
19	수상레저 시설	▶ (사고 위험성)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 보유사업장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및 안전 민원 발생사업장
20	어선	▶ (점검 미흡) 최근 2년간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어선 ▶ (사고 위험성) 승선정원 13인 이상 어선

참고 2

평가 지표

분야	평가항목	평가지표	평가 방식	배점			비 고
				중앙	시도	시군구	
6개	14개	24개	-	100	100	100	
일반 사항	1-1 실행계획 수립 적절성	① 실행계획 수립 적절성	서면	5	5	5	
	1-2 점검추진 실적	① 계획대비 추진 실적	서면	2	2	5	
		② 확인점검 실적	서면	3	3	×	
	1-3 기관장 관심도	① 기관장 관심도	현장	×	5	5	
		② 기관장 참여도	서면	10	5	5	
	1-4. 우수사례	①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	서면	(5) ^{가점}	(5) ^{가점}	(5) ^{가점}	
점검대상 선정	2-1 점검대상 선정과정 적절성	① 점검대상 선정과정	서면	5	5	5	
		② 점검대상 선정기준 적절성	서면	5	5	5	
	2-2 점검대상 선정기준 준수성	① 점검대상 선정기준 준수성	시스템	3	3	3	
		② 점검대상 선정기준 입력	시스템	2	2	2	
점검 방법	3-1 점검방법 적절성	① 민관합동점검 추진도	시스템/현장 (1차, 2차)	5	5	5	
		② 점검항목 준수성	시스템/현장 (1차, 2차)	10	5	10	
		③ 전문장비 활용도	서면	5	5	5	
	3-2 점검결과 적절성	① 점검 지적사항 적절성	시스템/현장 (1차, 2차)	10	5	10	
점검결과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	4-1 사후관리 노력도	① '23~'24년 후속조치 정비율	시스템	5	5	5	
	4-2 이력관리 노력도	① 점검결과 공개 실적	시스템	2	2	2	
		② 점검결과 이력관리 적절성	시스템	3	3	3	
	4-3 후속조치 노력도	① 후속조치 노력도	서면	10	10	10	
안전 문화 확산	5-1 홍보 노력도	① 기획 및 홍보실적	서면	8	5	5	
	5-2 국민참여 노력도	① 주민점검신청제 추진 노력도	서면	-	5	5	
		② 자율안전점검 확산 노력도	서면	-	3	3	
		③ 국민·기관·단체 참여도	서면	7	2	2	
시군구 평가	6-1 시군구 평가 적절성	① 시군구 평가과정 타당성	서면	-	5	-	
		② 시군구 평가결과 적절성	서면	-	5	-	

※ 평가 불가 지표의 경우 상위 항목 지표 점수로 환산(평가지표 → 평가항목, 평가항목 → 전체)

참고3

집중안전점검 시설 유형별 점검 분야 및 자격 기준

□ 시설 유형별 점검 분야

- ● : 필수 점검 , ▲ : 필요시 점검(해당 점검 항목 시설 유무에 따라 판단)
- 점검 분야 3개 이상 시설(1~13번)에서 전체 점검 대상의 70% 이상 선정
- 4개 이상 필수 점검분야시설(1~4번)은 해당 시설 취약요소 등을 고려 3개 분야 이상 선정시 인정

연번	시설유형	점검분야						
		담당 공무원	시설	토목	소방	전기	가스	기타
1	배터리 제조업체	●	●		●	●	▲	● (산업안전) ▲ (화학물질) ▲ (위험물질) ● (배터리)
2	공장 시설 (산업단지 등)	●	●		●	●	▲	● (산업안전) ▲ (화학물질) ▲ (위험물질)
3	폐기물 처리시설	●	●	▲	●	●		● (환경)
4	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	●	●		●	●	▲	● (산업안전) ▲ (화학물질) ▲ (위험물질)
5	전통시장	●	●		●	●	▲	
6	공동주택	●	●		●	●	▲	
7	주택	●	●		●	●	▲	
8	숙박시설	●	●		●	●	▲	
9	대규모점포 (백화점·대형 마트· 지하도상가)	●	●		●	●	▲	
10	다중이용업소 (노래방·목욕장업 등)	●	●		●	●	▲	
11	사찰	●	●	▲	●	●	▲	
12	요양시설	●	●		●	●	▲	● (의료법) (의료법) 담당 공무원 점검
13	자동차 정비소	●			●	●		● (산업안전)
14	가축 농장	●			●	●		
15	하강 레저시설 (집라인·번지점프· 패러글라이딩)	●	●					● (하강 레저)
16	공사 현장	●						● (산업안전)
17	교량	●		●	▲			
18	저수지 뉘시터	●			●	▲	▲	
19	수상레저 시설	●						● (수상 레저)
20	어선	●						● (해양 교통)

□ 점검 분야 점검자 자격 기준

※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점검 주체에서 실질적, 효율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특성에 맞는 점검반 편성

구분	자격요건	비고
시설	▶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관련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-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 이수자	
토목	▶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관련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- 분야(교량 및 터널, 수리, 항만 등)별 정밀안전진단 교육 또는 성능평가 교육 이수자	
소방	▶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- 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, 실무 3년 이상 소방공무원, 2급 소방안전관리 시험 합격자	
전기	▶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중급기술자 이상 - 기능장, 기사 취득 2년 실무, 산업기사 취득 5년 실무, 기능사 취득 8년 실무	
가스	▶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관련 안전관리(가스)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▶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안전관리자 자격	
산업안전	▶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관련 안전관리(건설안전)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 자격	
화학물질	▶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	
위험물질	▶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9항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	
환경 (폐기물)	▶ 폐기물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 자격	
설비	▶ [터널-지하차도]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 제6항 관련 기계분야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	터널(비상 승강기 포함)
배터리	▶ 한국전지산업협회(KBIA),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(KIER), 한국산업교육원(KIEC), 글로벌 배터리 컨퍼런스(GBC) 등에서 교육(교육 이수) 또는 인증 등의 3년 이상 활동 경험 ▶ 배터리 제조 및 품질관리 등의 3년 이상 실무 경험	
해양 교통	▶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1항 선박검사원 자격 - 선체검사원, 전문검사원	
하강 레저	▶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기관 ▶ 국민체육진흥공단, 스포츠안전재단, 한국하강레저협회 등 하강레저시설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	